

- 공급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번지 일원(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급대상: 전용 8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608세대 중 급회 공급세대 327세대
- 시행사: 창원뉴스테이[주] ■ 시공사: [주]삼정기업, [주]삼정아엔시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는 견본주택 관람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ssgreencore2.com)을 운영할 예정이며,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입차인모집 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입차인모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청약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해당 청약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동반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동반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일정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 최소화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 추가 입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차인 모집공고(2023.02.08(수))를 준용합니다.

### I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주택정책과 - 7299호(2023.03.14)로 입차인모집 공급신고 수리
- 공급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번지 일원(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총 608세대(특별공급 588세대) 및 부대복합시설
- 급회 공급대상: 총 608세대중 327세대(특별공급 327세대) (단위: ㎡, 세대)

구분	주택관리 번호	전용 면적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계		
				추가전용면적	추가공용면적	공급면적			청년	신혼	고령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38 50003	59㎡	59A	59.9536	23.7168	83.6704	38.3080	121.9784	47	54	11	-	112	2025년 2월	
			59B	59.9960	24.9270	84.9230	38.3350	123.2580	40	43	5	-	88		
			59C	59.9449	23.5433	83.4882	38.3024	121.7906	30	27	5	-	62		
			75	75	75.2470	25.0036	100.2506	48.0799	148.3305	20	14	4	-		38
			84	84	84.7229	24.0129	108.7358	54.1346	162.8704	20	2	5	-		27
			합계					157	140	30	-	327			

### II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입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최대 8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정기간 시작일로부터 8년이 지난 날 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자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자정기간 시작일로부터 8년이 지난 날까지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타입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해당 세대수	임대보증금 총액	계약금					잔금	월 임대료 (전층)
					1회	2회	중도금 3회	4회	5회		
59A	236	특별공급	112	179,000,000	20,000,000	15,800,000	17,900,000	17,900,000	16,110,000	73,390,000	-
59B	116	특별공급	68	178,000,000	20,000,000	15,600,000	17,800,000	17,800,000	16,020,000	72,980,000	-
59C	71	특별공급	62	177,000,000	20,000,000	15,400,000	17,700,000	17,700,000	15,930,000	72,570,000	-
75	66	특별공급	38	210,000,000	23,000,000	19,000,000	21,000,000	21,000,000	18,900,000	86,100,000	-
84	99	특별공급	27	229,000,000	25,000,000	20,800,000	22,900,000	22,900,000	20,610,000	93,890,000	-

- 상기 임대조건에 따른 계약금 및 선착순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약 11%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에서 가법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납부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8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단, 100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에 소관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III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차인 모집공고일(2023.03.15(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령: 만 19세 이상인면서 39세 이하일 것(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li> <li>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li> <li>다.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 포함)대상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i> <li>(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은 입차인 모집공고일(2023.03.15(수)) 현재 경상남도 거주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며, 경상남도 외 지역의 거주자가 청약하여 당첨 시 계약 체결 불가함.</li> <li>•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li> <li>-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li> <li>-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li> <li>-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li> </ul>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차인 모집공고일(2023.03.15(수))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입국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li> <li>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5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 입차인을 선정한다.</li> </ul>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차인 모집공고일(2023.03.15(수))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입국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li> <li>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li> </ul> </li> </ul>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차인 모집공고일(2023.03.15(수))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입국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령: 만 65세 이상일 것(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li> <li>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li> </ul> </li> </ul>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10% 이하	3,689,272	5,505,914	7,390,018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20% 이하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구분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li> <li>(인터넷청약 시 거래 은행계좌에서 출금)</li> <li>※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은 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li> </ul>

-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호 제2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중매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 또는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임대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받은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의 소유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말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당한 경우
  - 7. 무허가건물(중정된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 및 제4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IV 공급일정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청년/신혼/고령자)	2023.03.20(월) 09:00 ~ 17:30	인터넷 청약접수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10만원	• 일시: 2023.03.23(목) 16:00 -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상기 신청 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당첨자 발표 장소
특별공급	2023.03.23(목)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5번지)

- 차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우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V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	일정	장소
특별공급	구비서류 제출	2023.03.24(금) ~ 2023.03.26(일) 10:00~16:00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5번지)
특별공급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3.27(월) ~ 2023.03.28(화) 10:00~16:00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동서류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건강증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치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청년	○	2. 건강보험자격 특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5. 사실증명원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6.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신혼부부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확인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1. 결혼 확인서류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로 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원별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공동 (해당자)		○	1. 임신증명서류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2. 건강보험자격 특실확인서	• 임신이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입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비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당첨일시,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출산이행각서(견본주택 비치)
		○	1. 건강보험자격 특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고령자	○	1. 건강보험자격 특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주택공급신청서임원(본인 발급용), 청약자기준
		○	2.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채의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제 3차 대리인 신청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	2. 위임장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입차인 모집공고일(2023.03.15(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원본일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서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정과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li> <li>•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li> <li>•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li>•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국민연금관리공단</li> <li>• 국민연금관리공단</li> <li>• 세무서</li> </ul>
국민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li> <li>• 수급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국민연금관리공단</li> </ul>
비정규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li> <li>•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해당직장</li> </ul>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li> <li>•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 비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li> </ul>

###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13-2016-9452-0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입금 시 호실과 계좌자성명을 필히 기재(예: '2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2011001홍길동)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001홍길동)
- **추가선택사항 옵션목록**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정일	입주시정일	비고	
중문설치	전세대	1,000,000	100,000	900,000	3연동 중문		

구분	금용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4-9830-01	창원뉴스테이 주식회사

- **입주자정기간: 2025년 2월 중 (예정)**
- **본 사업관련 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택공급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용자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계약금, 중도금에 한함.)**
- **임대보증금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